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9월 1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8.(수) 0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9. 17(화)	담당부서	무역정책관
담당과장	권덕중 팀장(044-203-4068)	담 당 자	조영길 사무관(044-203-402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 기존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
-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 최소화 적극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함**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 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 (일본: '가의2' 지역으로 분류)
-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 적용

* 기존 행정예고(8.14일) 개정안 내용과 동일

1. 추진 배경

□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음

2. 그간 경과

□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8.12일)**하였으며,

○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였음 (☞ 접수의견 주요내용 첨부)

3. 향후 계획

□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임**

○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하였음

○ 향후 **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음

□ 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조영길 사무관(☎ 044-203-4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행정예고 접수의견 주요내용 검토**

1. 찬성의견

의견 주요내용	검토의견
▪전략물자 수출 규제 강화 ·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규제 필요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 강화 필요 ·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 필요 / 나 지역으로 변경 필요 · 대북한 수출 등 안보위험이 상존하는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제한, 특별관리 필요 · 국가가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필요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국제 공조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출통제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심사기간 연장 ·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90일 또는 100일로 연장하여 세밀한 심사 추진	· 심사기간의 상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고시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음 · 또한, 현행 제도 내에서도 취지를 살려 충분히 세밀한 전략물자 수출 허가심사 가능
▪전략물자 관리체계 개선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포괄규제 충실 · 수출입관리 인원 증원 · 위반자에 대한 실명 발표 등 행정 처분 강화 필요	·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美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평가 등) · 산업부, 원안위, 방사청, 전략물자관리원 등의 전담인력은 충분 (110여명) · 행위위반자에 대한 공표 제도도 운영 중
▪일본측 조치에 대한 맞대응 ·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 한국도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 필요 ·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 · 국민적 자존심, 국가적 자주성 확보 필요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님 · 금번 조치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제품 수출금지 · OLED, D램 등 전면 수출금지 필요	·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한 사항임 · 이번 고시 개정은 국내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기타 · 산업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8.5일), 소재·부품·장비산업 R&D 대책(8.28일)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중

2. 반대의견

의견 주요내용	검토의견
▪일본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오해 · 한국은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시행 방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 · 3개 품목의 개별허가 전환으로 반도체 및 OLED의 국제공급망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모든 포괄허가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님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일본의 제도운영 방식, 對한국 수출규제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며 오해한 사실이 없음
▪일본을 신설지역으로 분류한 사유 ·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 운영, 부적절 운영사례 지속 발생'의 의미 설명 필요	·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것을 의미
▪한국 기업의 피해 증가 · 수출 감소 및 성장률 하락세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 ·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투명한 절차 운영, 수출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임

▪**개정안의 효과** · 일본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주기 어려움 · 방사능 검사 등 비관세 규제가 더 효과적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님 · 금번 개정안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품목 수출규제 강화나 방사능 검사 등 비관세 규제와 관련이 없음
▪**개정안에 대한 설명** ·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금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님 · 고시개정 발표전에 일본측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로 고시 개정 사유를 설명

참고 2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Q&A

1. '가의1 지역(기존 가)' 대비 '가의2 지역' 주요 변경사항

□ 개별수출허가

☞ **(신청서류)** 가의2 지역은 기존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하여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됩니다.

☞ **(심사기간)**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므로 수출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적용되며,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의2 지역은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므로 CP기업이라면 1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적용됩니다.(다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별도 심사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

☞ **(개별수출허가 면제)** 기존과 달리 가의2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 가의2 지역에서 최종사용자를 확인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수출허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포괄수출허가

☞ **(심사기간)**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수출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AAA등급 CP기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됩니다.

❶ 사용자포괄수출허가

☞ **(자격제한)**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등급 CP

기업도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시,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하여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수하인이 ❶수출자의 최대주주, ❷수출자의 해외본점, ❸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❹수출자의 해외지점, ❺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재수출)** 기존 사용자포괄허가시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사용자포괄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 국가가 가의2지역의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 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한 국가에 한하여 사용자포괄허가가 효력을 가집니다.

❷ 품목포괄수출허가

☞ **(자격제한)** 품목포괄허가의 사용 자격이 AA등급 이상의 CP기업에서 AAA등급 CP기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기관인 경우 AA등급 CP기업도 가능하며 플랜트건설 등 동일 목적의 다품목 장기공급 예상 시에는 모든 등급의 CP기업이 품목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허가

☞ **(요건)** 가의2 지역의 상황허가 요건이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서면통보 받은 경우(Inform), 기존의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Know), 나아가 전용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Suspect)에도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개허가, 경유 · 환적허가

☞ **(허가면제)** 기존과 동일하게 가의2 지역에 대하여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면제됩니다.

2. Q&A(설명회 질의 중심)

❶ (기존허가) 기존에 발급받은 수출허가는 모두 취소되나요?

☞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旣수출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며, 포괄허가의 경우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❷ (개별허가면제)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자주 참가합니다. 향후 허가 대상인가요?

☞ 전시회 등의 참가는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변함없이 개별수출허가면제 대상입니다.

❸ (포괄허가)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요건 중 "동일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은 "실적"과 "계획"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 수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❹ (제출서류)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면제 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하면 최종수하인 증명서 면제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최종사용자 서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❺ (통제품목) 이번 개정에 변경되는 품목 통제기준이 있나요?

☞ 별표2, 별표3 등 품목 관련 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❻ (심사기간) 수출허가 신청 후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나요?

☞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 등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소요 일수는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❼ (CP요건) 고시 개정으로 인한 허가 심사 강화에 따라 CP 도입이나 등급 상향 예정인 기업을 위해 CP 지정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 CP 활성화를 위해 CP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CP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3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종류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개별 허가	신청서류	3종 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전문/자가) 영업증명서	5종 수출허가 신청서 판정서(전문/자가) 영업증명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등** **최종사용자 서약서**
	심사기간	5일	15일 이내(1)
	개별허가 면제 (재수출·중계수출 관련)	허가 면제	허가 필요
포괄 허가	심사기간	5일	15일
	유효기간	3년	2년(2)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CP 전체 등급	CP AA 이상 (CP A 예외적 허용)(3)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	1종 수출허가 신청서	3종(4) 수출허가 신청서 **최종수하인 진술서** **판정서(전문/자가)**
	사용자포괄허가의 재수출	가능	예외적 허용(5)
	품목포괄허가 신청대상	CP AA 이상	CP AAA(6)
상황 허가	허가대상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인지한 경우 통보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1) AAA등급의 CP기업 5일, AA 기업 10일, A 기업 15일(단, 소관체제 가입국으로 동물자 수출포함 시 10일)
(2) AAA등급 CP기업의 경우 3년
(3)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 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 시, 해외전시회 참가 시
(4) 단, 최종수하인이 ① 수출자의 최대주주, ② 수출자의 해외본점, ③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 수출자의 해외지점, ⑤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
(5)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정
(6)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기관인 경우 AA도 신청 가능, 플랜트건설 계약 등 동일 목적의 多품목 장기공급 예상 시 모든 CP 등급 신청 가능